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98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이해식 · 박상혁 · 윤준병
한민수 · 신정훈 · 권칠승
양부남 · 한병도 · 김성희
모경종 · 차지호 · 김교홍
허성무 · 김태년 · 임호선
김영배 · 최혁진 · 염태영
박수현 · 박홍배 · 허영
맹성규 · 윤건영 · 민형배
장철민 · 고민정 · 박정현
윤종균 · 송재봉 · 강경숙
황희 · 박민규 · 문금주
이원택 · 이학영 · 복기왕
김남근 · 김원이 · 강준현
이재관 · 문정복 · 이연희
김한규 · 임미애 · 전진숙
손명수 · 김승원 · 조인철
허종식 · 백선희 · 조계원
김태선 · 위성곤 · 이광희
이상식 · 김준혁 의원
(56인)

제안이유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수도권의 과밀 문제와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 약화가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 이후 지역의 자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지원해왔으나,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특히 지역의 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과 재정 지원이 정책 효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기반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재정 지원·정책 집행이 연계·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존속기한 폐지(안 제1조, 제5조, 제62조 등)

- 1) 현행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함.
- 2) 위원회의 존속기한(5년)을 삭제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함.

나. 종합계획의 개편(안 제6조, 제11조의2 신설 등)

- 1) 현행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으로 개편하여 5극3특 비전,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반영하도록 하고, 기존 계획과의 연속성은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함.
- 2) 또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 담당자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정부가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9조)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 도입(안 제11조의3 신설)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

마. 초광역특별협약 신설 및 추진협의체 설치(안 제30조, 제31조 등)

- 1) 초광역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약을 도입함.
- 2) 초광역협력사업과 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바. 특별협약 통합공모(안 제31조)

특별협약 체결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통합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2조, 제63조)

- 1) 자치분권 분야 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2명으로 확대하고, 자치분권·균형발전 각 분야를 분담하도록 함.
- 2) 위촉위원 정원을 21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추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함.

아. 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 규정 보완(안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2 신설)

- 1)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하여 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여 위원회의 사전조정권을 강화함.
- 2) 5극3특 전략 추진을 위하여 기존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을 “것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한다.

8의2. “초광역특별협약”이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약을 말한다.

8의3. “초광역특별회계”란 초광역권 단위 사업을 통합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역균형발전”을 각각 “균형성장”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2조에 따른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이하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이하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지방시대 계획”을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각각 “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중 “지방시대”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수립된 자치

분권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시대”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지방시대 계획”을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시·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5항까지에서”로 하며, 제4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후단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포상)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날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시 기념일 외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균형성장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시대”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시대”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시대”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시대지원단”을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초광역협력사업을 신속·통합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별협약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일반형: 지역발전투자협약
 2. 초광역형: 초광역특별협약(제30조의 초광역협력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주도와 민간참여를 포함한다)
- ② 특별협약은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협약안은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심의 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또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모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 공모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공모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⑤ 초광역협력사업은 초광역특별협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하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특별협약의 유형별 체결요건·절차·운영·평가·갈등조정·성과배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권역에서는 광역연합체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운영, 민간참여 방식, 권한과 책임, 회계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

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둔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시대”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는”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으로,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을 “2명을 포함하여 5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대표자”를 “대표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중 “지방시대기획단”을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제63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자치분권분과위원회와 균형성장분과위원회를 둔다.

⑩ 자치분권분과위원회와 균형성장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⑪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4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지방시대위원회의”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로, “지방시대위원회에”를 “분과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자치분권분과위원회의 기능 등) ① 자치분권분과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회의에 부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한다.

1.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제7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9.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자치분권분과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위원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치분권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분권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균형성장분과위원회의 기능 등) ① 균형성장분과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회의에 부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한다.

1. 균형성장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균형성장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8.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9.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균형성장분과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위원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균형성장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성장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순으로”로 한다.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을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및 제2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중 “지방시대지원단”을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 및 시·군·구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8조의 제목 “(지방시대기획단)”을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시대위원회의”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소속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의”로,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소속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시대기획단”을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을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 지원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시대기획단”을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으로 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로, “지방시대위원회에”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제74조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제7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지역

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4항”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를 “들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에 따라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는 종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이 법에 따른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으로 본다.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수립 시 이에 따른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은 종합계획 수립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시·도 계획, 부문별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 계획, 부문별 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도 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은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위촉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지방시대 위원회의 위원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

· 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본다.

제5조(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은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으로 본다.

제6조(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그 다음 연도까지는 각각 종전의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회에의 연차보고에 관한 특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다음 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의 작성 대상은 기존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그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5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시대 계획”을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으로 한다.

③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지방시대 계획”을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77조제7항 중 “지방시대”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등”으로 한다.

⑥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⑦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⑧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⑪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⑫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시대 계획”을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으로 한다.

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⑭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⑮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⑯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이하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⑪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⑫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단서, 제5조의2제5항 본문·단서 및 제2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각각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9항 중 “지방시대”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u>지역균형발전을</u>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u>지방시대를</u>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균형성장</u> -----	

			----- <u>것을</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u>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u>		1.	-----	

			----- <u>주민의 자발적 참</u>	
			<u>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u>	
			<u>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u>	
			<u>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u>	
			<u>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u>	
			<u>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u>	
			<u>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u>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 7. (생략)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 · 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신설>

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말한다.

2. 균형성장-----

-----.

3. ~ 7. (현행과 같음)

8. -----균형성장-----

-----.

8의2. “초광역특별협약”이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약을 말한

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② (생략)

<신설>

-----.

② -----
-----균형성장-----

-----.

③ -----
-----균형성장-----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62조에 따른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행정기관 소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
표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
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④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
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
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
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
계되어야 한다.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

1. -----균형성장----
-
- .
2. -----균형성장----
-
-
3. -----균형성장----
-
-
4. -----
- 균형성장-----
-

④ 자치분권균형성장-----

-----.

⑤ 자치분권균형성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
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
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 중
합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
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

-----.
자치분권균형성장-----

-----.
⑥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수립된 자치분권균형성장-----
-----.
-----자치
분권균형성장-----

-----.
⑦ -----
-----자치분권균형성
장-----

-----.

제7조(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의 부문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치분권균형성장

-----.

④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

자치분권균형성장-----

-----.

② (현행과 같음)

한다.	-----.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	-----
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다른	-----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	-----
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	-----
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설	-----
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	-----
전시행계획 또는 시·도의 시	-----
·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	-----
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	-----
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
<u>지방시대위원회</u> 는 해당 중앙행	<u>자치분권균형성장</u> -----
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	-----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
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
수 있다.	-----.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u>지방시대위원회</u> 는 매년 시·도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
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
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②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포상) ① 정부는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날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시 기념일 외
의 시기에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국적으로 균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균형성장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요한 사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치분권균형성
장. -----

자치분권균형성장-----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

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 ④ (생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

---자치분권균형성장-----

---.

② -----

----자치분권균형성장-----

-----자치분권균형성장-----

③ -----

-----자치분권균형성장-----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자치분권균형성장-----
-----.

-----.

⑥ (현행과 같음)

⑦ 자치분권균형성장-----

-----.

-----.

1. ~ 3. (현행과 같음)

4. -----

자치분권균형성장-----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생략)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
정)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
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
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집
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
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
성) ① (생략)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의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
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자치분권균

형성장위원회-----

③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
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분권균형성장-----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② (생략)

<신설>

-----.

-----.

③ -----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1항의 초광역협력사업을 신속·통합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초광역특별협약

제31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별협약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일반형: 지역발전투자협약
2. 초광역형: 초광역특별협약 (제30조의 초광역협력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주도와 민간참여를 포함한다)

② 특별협약은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협약안은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심의 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또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모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 공모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공모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⑤ 초광역협력사업은 초광역특별협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하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특별협약의 유형별 체결요건·절차·운영·평가·갈등조정·성과배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

<신 설>

<신 설>

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 · 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권역에서는 광역연합체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

	<u>성 · 운영할 수 있다.</u> <u>④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 운영, 민간참여 방식, 권한과 책임, 회계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생 략) ②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u>지방시대위원회</u>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	<u>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u> <u>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u>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③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45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제10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

③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②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생략)

② 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시대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③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③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④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으로 정한다.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생략)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2. (생략)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중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 12. (생략)

-----.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제4장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등

제62조(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둔다.

제63조(기능) 자치분권균형성장-----

-----.

1. 2. (현행과 같음)

3. -----자치분권균형성장-----

4. ~ 12. (현행과 같음)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생략)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13.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14. (현행과 같음)

제64조(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2명을 포함하여 51명-----
-----.

② -----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표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③ 자치분권균형성장-----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⑤ (생략)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지방시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⑦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⑧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
---.

⑨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는 제63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자치분권분과위원회와 균형성장분과위원회를 둔다.

⑩ 자치분권분과위원회와 균형성장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자

<신 설>

⑩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

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⑪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⑫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

⑬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⑭ -----제13항-----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구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성-----
-----.

제64조의2(자치분권분과위원회의
기능 등) ① 자치분권분과위원
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회의에 부칠 다음 각 호의 안
건을 사전 검토·조정한다.

1.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
항

2.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
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
요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
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
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
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신 설>

7. 제7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9.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자치분권분과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위원 중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치분권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분권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균형성장분과위원회의 기능 등) ① 균형성장분과위원회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회의에 부칠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한다.

1. 균형성장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균형성장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8.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9.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균형성장분과위원회는 자치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u>지방시대위원회</u>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부위원장이</u>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 ① 위원장은 <u>지방시대위원회</u>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u>지방시대위원회</u>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u>시·도 지방시대위원회</u>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	<u>분권균형성장위원회</u> 위원 중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장이</u>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u>균형성장분과위원회의</u>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균형성장분과위원회</u>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② ----- ----- <u>위원장이</u> 미리 지명한 <u>부위원장</u> 순으로--- 제66조(회의) ①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② <u>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 -----. 제67조(<u>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u> 등의 설치·운영) ① -
--	--

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②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

③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 및 시·군·구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

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8조(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 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소속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의-----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소속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

②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

제69조(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 지원조직) ①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

②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③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②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

--.

③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④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
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
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
다.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치분권균형
성장위원회-----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

④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자치분권균형성
장위원회-----
--.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제2장에 따른 <u>지방시대</u> 중 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3. (생략)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u>지방시대</u>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 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 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u>제 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u>으로 구분한다.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u>제주</u>	----- ----- --. ② ----- ----- --. 1. -----<u>자치분권균형성 장</u>----- 2. 3. (현행과 같음)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u>자치분권균형성장</u>----- ----- ----- ----- --. 제76조(계정의 구분) ----- -----<u>제 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 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주</u>
--	--

<u>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u>으로부터의 전입금 8. ~ 12. (생략)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u>으로의 전출금 7. (생략) ③ (생략)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u>으로부터의 전입금 7. ~ 11. (생략) ② ~ ④ (생략)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u>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 8. ~ 12.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	---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 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u>으로부터의 전입금 3. ~ 5. (생 략)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 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u>으로의 전출금 5. (생 략) ③ (생 략)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 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 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 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u>으로부터의 전입금 3. ~ 5. (생 략)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 1. (현행과 같음) 2. -----<u>지역 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 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3. ~ 5.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 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 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 입과 세출)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지역 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초광역특별계정</u>----- 3. ~ 5.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	--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의 전출금

4. (생략)

③ (생략)

<신설>

3. -----지역
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초광역특별계정-----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의 세
입과 세출) ① 회계의 초광역
특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
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
등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가. <u>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u> 나. <u>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u> 다.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u> 2. <u>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u> 3. <u>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의 전출금</u> 4. <u>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u>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 ----- ----- ----- ----- -----
--	---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자치분권균형
성장위원회 -----
-----.

② -----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

③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④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한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
-----예산편성에 관
하여, 제4항-----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들어야 ---.

⑥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